

# 건설동향브리핑

CERIK

제929호  
2023. 10. 27.

- || 1~3분기 해외수주 235억 달러, 전년 대비 5.0% 증가
- || 업무 성과 향상에 기여, 산업 내 디지털 기술 중요성 커져
- || 건설산업 주요 유관 법률 입법 동향(2023년 10월)

한국건설산업연구원

Construction & Economy Research Institute of Korea

# 1~3분기 해외수주 235억 달러, 전년 대비 5.0% 증가

- 8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 4분기는 전쟁, 고유가, 고금리 등 불안 요인 산재 -

## ■ 국내 284개 기업, 86개국에서 총 443건의 사업 수주해 235억 달러 기록(9월 30일 기준)

- 올해 3분기 기준 235억 달러는 지난 2015년 3분기(345억 달러) 이후 8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임.
  - 3분기 기준 누적은 지난 2019년 연간 수주 실적(223억)보다도 높은 수준이지만, 지난 8월 기준 실적(219억 달러)이 전년 동기 대비 20% 높았던 점을 고려할 때 9월 들어 증가세가 둔화됨.
  - 또한, 235억 달러 중 34.7%가 국내 기업의 해외생산 시설 발주 공사로 2022년(98.4억 달러, 전체 수주의 31.8%)에 이어 해외건설 수주에 상당한 비중을 차지함.

<표 1> 최근 10년 연간 및 3분기 누적 해외건설 수주 현황

(단위 : 억 달러)

구분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3분기	459	483	345	187	213	222	165	185	174	224	235
연간	652	660	461	282	290	321	223	351	306	310	-
3분기 수주 비중(%)	70	73	75	66	73	69	74	53	57	72	-

자료 : 해외건설협회.

## ■ 공종별로는 산업설비(46.6%), 건축(38.3%), 전기(6.4%), 토목(5.7%), 지역별로는 중동(33.9%), 북미·태평양(31.5%), 아시아(19.9%) 순

- 산업설비는 109.8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0.7% 증가했는데 산업설비 수주액 중 65.5%를 중동 지역이 차지함.
  - 건축 부문이 90억 달러로 전체 수주의 38.3%를 기록했는데 이는 전년 동기대비 47.3% 증가한 것으로 전술한 바와 같이 국내 제조사의 해외 생산시설 공사 물량의 증가가 주요 영향 요인임.
  - 토목 부문은 전년 동기 대비 64.3% 하락한 13.3억 달러를 기록했는데 사우디 네옴시티 터널 프로젝트 발주 지연 등의 영향으로 부진한 상황임.
  - 전기 부문은 15.1억 달러로 전체 수주의 6.4%를 차지하며 전년 동기 대비 106.3%의 증가율을 기록했지만, 용역 부문은 지난 1월의 대규모 기자재 실적에 따른 기저 효과로 같은 기간 대비 62.8% 하락한 6.8억 달러를 기록함.

&lt;표 2&gt; 공종별 수주 현황

구분	'23 3분기		'22 3분기		전년 대비 증감률(%)	누계	
	금액(백만 달러)	비중(%)	금액(백만 달러)	비중(%)		금액(백만 달러)	비중(%)
산업설비	10,983	46.6	9,917	44.1	10.7	538,860	56.6
건축	9,001	38.3	6,112	27.3	47.3	187,174	19.6
전기	1,518	6.4	736	3.3	106.3	24,310	2.5
토목	1,334	5.7	3,742	16.7	-64.3	177,767	18.6
용역	681	2.9	1,831	8.2	-62.8	22,318	2.3
통신	15	0.1	81	0.4	-82.1	3,619	0.4
합계	23,531	100	22,419	100	5.0	954,048	100

자료 : 해외건설협회.

- 중동 지역은 사우디 아미랄 석유화학 프로젝트(50.8억 달러)를 필두로 리비아 패스트 트랙 발전공사(7.9억 달러) 등을 수주하며 전년 동기 대비 20.4% 증가한 79.8억 달러를 기록함.
  - 북미 태평양 지역이 74.2억 달러로 전체 수주의 31.5%를 차지했는데, 전년 동기 대비 159.1% 증가한 것으로 74.2억 달러 중 93.6%가 국제 제조사 발주 사업임.
  - 아시아 지역은 46.8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절반(-49.1%)가량 감소했으며, 중남미 지역이 13.3억 달러(전체 수주의 5.7%), 유럽 지역이 11.6억 달러(전체 수주의 4.0%)를 기록함.
  - 초도 진출 이후 지역별 누적 수주를 보면 전체의 50.2%를 중동이 차지하며, 아시아가 32.4%로 두 시장의 비중이 82.6%에 이룸. 북미·태평양 및 유럽 등 다른 지역에서 불규칙하게 대형 사업이 수주되면서 일시적으로 수주 비중이 증가하지만, 여전히 시장 다각화 측면에서는 수주의 지속성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임.

&lt;표 3&gt; 지역별 수주 현황

구분	'23 3분기		'22 3분기		전년 대비 증감률(%)	누계	
	금액(백만 달러)	비중(%)	금액(백만 달러)	비중(%)		금액(백만 달러)	비중(%)
중동	7,984	33.9	6,634	29.6	20.4	478,929	50.2
북미태평양	7,423	31.5	2,865	12.8	159.1	48,466	5.1
아시아	4,682	19.9	9,194	41.0	-49.1	208,902	32.4
중남미	1,338	5.7	204	0.9	555.8	49,990	5.2
유럽	1,164	5.0	2,552	11.4	-54.4	37,988	4.0
아프리카	940	4.0	970	4.3	-3.1	29,773	3.1
합계	23,531	100	22,419	100	5.0	954,048	100

자료 : 해외건설협회.

- 국가별로는 미국의 72.2억 달러 전체 수주의 30.7%를 차지했으며, 사우디아라비아가 62.7억 달러로 26.5%를 차지해 두 국가의 비중이 57.2%(134.5억 달러)에 달함.

- 미국은 전년 동기 대비 237%가 증가한 금액이며, 사우디아라비아도 107.4%가 증가한 금액임. 사우디아라비아에 진출한 이후 현재까지 누적 수주는 1,624억 달러로 전체 수주의 17%를 차지함.
- 대만과 카자흐스탄이 각각 14.9억 달러와 9.3억 달러를 기록해 올해 3분기까지 누적 수주의 6.3%와 4.0%를 차지함. 상위 1~10위 국가의 수주실적은 전체 수주의 84.8%인 199.4억 달러임.

&lt;표 4&gt; 국가별 수주 현황

(단위 : 천 달러)

순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3분기	
	국가	계약액	국가	계약액	국가	계약액	국가	계약액
계	97개국	35,129,165	91개국	30,579,701	97개국	30,980,942	86개국	23,531,383
1	이라크	4,470,937	사우디	5,692,791	인니	3,669,203	미국	7,225,215
2	멕시코	3,709,730	UAE	2,878,456	사우디	3,481,785	사우디	6,237,220
3	파나마	2,848,580	호주	2,412,456	미국	3,462,664	대만	1,491,987
4	베트남	2,746,869	카타르	2,232,774	이집트	2,775,939	카자흐	935,345
5	알제리	2,473,681	싱가포르	1,972,334	카타르	1,650,385	나이지리아	887,791
6	사우디	2,413,214	러시아	1,784,508	필리핀	1,624,402	UAE	861,026
7	UAE	1,986,584	폴란드	1,747,890	베트남	1,564,504	리비아	822,511
8	방글라데시	1,744,909	베트남	1,619,779	중국	1,234,972	폴란드	696,534
9	카타르	1,719,923	대만	1,539,318	러시아	1,162,806	베트남	400,326
10	중국	1,378,142	말련	1,419,523	말련	1,120,741	엘살바도르	385,382
	기타	9,636,596	기타	7,279,872	기타	9,233,541	기타	3,588,046

자료 : 해외건설협회.

#### 4/4분기 해외건설시장은 전쟁, 고유가, 고금리 등 불확실성을 키우는 요인들이 산재해 있는 상황으로 선제적 모니터링 강화 필요

- 양호한 국제유가 수준이 지속되면서 사우디를 중심으로 하는 중동 발주가 성장세를 기록하는 가운데 최근 발생한 이스라엘-하마스 간 무력 충돌은 해외건설시장의 최대 위협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 무력 충돌이 주변국으로 확산되고 장기화할 경우 유가 폭등, 세계 경제 침체 등으로 인해 해외건설시장의 발주환경이 악화할 수 있어 최근 수주 회복세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손태홍(연구위원 · thsohn@cerik.re.kr)

## 업무 성과 향상에 기여, 산업 내 디지털 기술 중요성 커져

- 공정 및 안전·보건관리, 공사비 관리 향상을 위한 BIM·디지털 트윈 활용 높아 -

### ■ RICS의 Global Construction Monitors와 디지털 동향 조사<sup>1)</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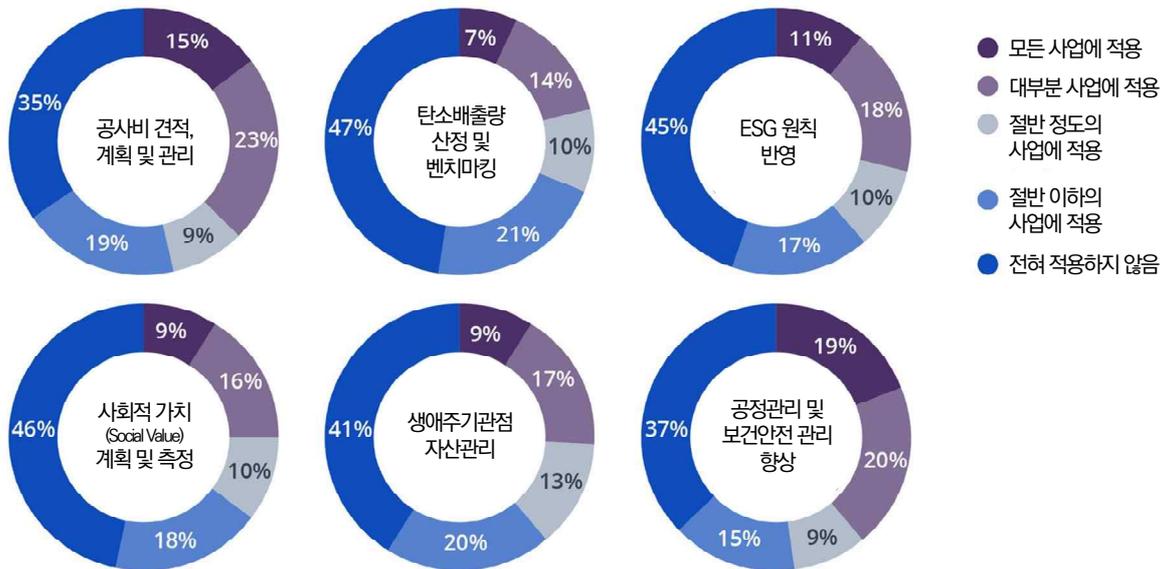
- 영국왕립감정평가사협회(RICS)는 Global Construction Monitors를 통해 유럽, 아시아·태평양, 북미, 중동, 아프리카 지역 건설시장의 분기별 동향을 조사·발표하고 있으며, 지난해부터 BIM과 디지털 트윈으로 대표되는 디지털 기술의 활용 동향을 발표함.
  - RICS는 동 연차보고서를 통해 디지털 기술의 도입 현황과 향후 동향 전망, 디지털 기술 활용의 장애요인 등을 진단하고 있음.
  - 건설산업이 기후변화 및 ESG 등 사회적으로 요구되는 다양한 변화에 대응하는 데 있어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디지털 기술로 평가됨. 일례로 온실가스 배출량 저감을 위해서는 산업 간 융합을 통한 디지털 기술의 적용이 필수적임.
  - 동 보고서는 2022년 4분기 Global Construction Monitors 조사를 통해 수집되었으며, 응답 기업의 지역별 비중은 영국 57%, 아시아·태평양 15%, 유럽 7%, 북미 9%, 중동·아프리카 11%임. 구체적인 기업 수는 제시되지 않았으나, 2022년 2분기 조사의 경우 2,800여 개 건설기업이 응답한 것으로 나타남.

### ■ 디지털 기술의 지속적인 업무 활용 분야

- 응답 기업들의 경우 ‘공정관리 및 보건·안전관리 향상’, ‘공사비 견적, 계획 및 관리’, ‘ESG 원칙의 반영’을 위한 BIM·디지털 트윈의 활용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 ‘공정관리 및 보건·안전관리 향상’을 위해 모든 사업에 BIM 또는 디지털 트윈을 활용하는 기업이 19%, 대부분 사업에 활용하는 기업은 20%로 나타났음.
  - ‘공사비 견적, 계획 및 관리’를 위해 모든 사업에 BIM 또는 디지털 트윈을 활용하는 기업은 15%, 대부분 사업에 활용하는 기업은 23%로 조사됨.
  - RICS의 설문조사에서 설정한 여섯 가지 업무 기능 중 모든 영역에 대해 디지털 기술을 전혀 적용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기업은 42%로 조사됨.

1) 본고는 영국왕립감정평가사협회(The Royal Institution of Chartered Surveyor, RICS)가 지난 6월 발간한 ‘Digitalisation in Construction Report 2023’ 보고서의 주요 내용을 정리한 것임.

<그림 1> 디지털 기술의 지속적인 업무 활용 조사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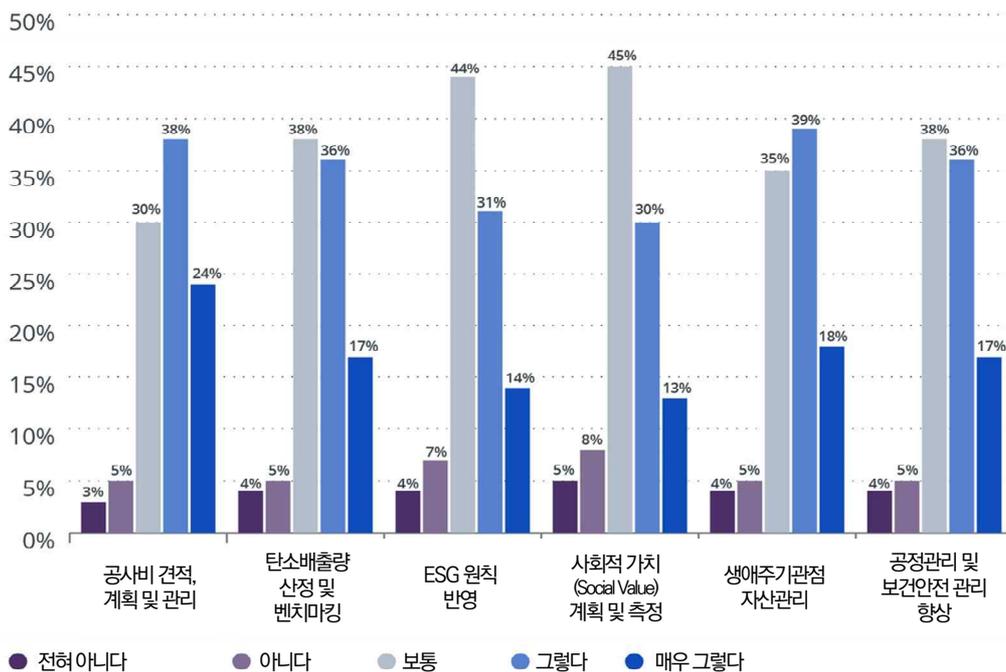


자료 : RICS(2023), "Digitalisation in Construction Report 2023".

### 디지털 기술 활용을 통한 업무 성과 향상

- BIM 또는 디지털 트윈 활용이 업무 성과 향상에 미치는 영향 역시 상술한 활용 조사와 유사한 결과를 보임.

<그림 2> 디지털 기술 활용을 통한 업무 기능별 성과 향상 여부 조사결과



자료 : RICS(2023), "Digitalisation in Construction Report 2023".

- 디지털 기술 활용이 업무 성과 향상에 기여하는지에 대해 ‘그렇다’ 또는 ‘매우 그렇다’를 응답한 비율은 ‘공사비 견적, 계획 및 관리(62%)’, ‘생애주기 관점의 자산관리(57%)’, ‘공정관리 및 보건·안전관리 향상(53%)’에서 높게 나타남.

## ■ 디지털 기술 도입의 장애 요인

- 디지털 기술 도입의 장애 요인은 ‘투입비용 및 노력’, ‘전문(Skilled)인력의 부족’, ‘발주자 또는 사업참여자의 불분명한 요구’가 상위 요인으로 조사됨.
  - 상위 장애 요인에 대한 응답 비중은 지역별로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남.
  - 이어 ‘사업참여자 간 디지털 기술 활용방식 불일치’, ‘데이터 표준 미흡’, ‘BIM 및 디지털 트윈 변수의 활용능력 부족’ 순으로 장애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조사됨.

<표 1> 설계 및 시공 업무의 디지털 기술 도입의 장애 요인(상위 3개)

지역 구분	투입비용 및 노력 부담	2. 전문인력 부족	3. 발주자·사업참여자 요구 불분명
북미	54%	50%	45%
아시아태평양	51%	47%	44%
영국	57%	52%	49%
유럽	59%	56%	45%
중동·아프리카	54%	46%	48%

자료 : RICS(2023), "Digitalisation in Construction Report 2023".

## ■ 디지털 기술 활용역량 확보 및 사업참여자 간 협업기반 구축 노력 필요

- 다양한 장애 요인에도 불구하고, 디지털 기술 적용이 가져올 수 있는 건설사업 수행 향상의 효과로 인해 디지털 기술의 확산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탄소배출과 관련해 디지털 기술의 기대효과는 매우 높을 것임.
  - 건설사업의 생애주기비용 및 탄소배출 관련 국제표준(International Cost Management Standard, Built Environment Carbon Database 등)이 확산됨에 따라 생애주기비용과 탄소배출량의 산정 및 비교분석을 위한 디지털 기술의 중요성은 더욱 높아질 것임.
- 디지털 기술 도입을 통한 효과를 더욱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조직구성원의 디지털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기술력과 전문성을 제고하고, 건설사업 수행 과정상 다른 사업참여자와 효과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는 데에도 노력이 필요함.
  - 디지털 기술의 효과적인 도입을 위해서는 디지털 기술 도입의 장애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요소들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음.

박희대(부연구위원 · hpark@cerik.re.kr)

## 건설산업 주요 유관 법률 입법 동향(2023년 10월)

이준범(부연구위원 · jblee@cerik.re.kr), 전영준 미래산업정책연구실장

### 이슈 1: 다시금 재점화되는 부당특약 효력 무효화법

- ◎ 건설산업은 대표적 수주산업이자 하도급 거래 관계가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산업 특성으로 인해 계약상대자 일방의 우월적 지위 남용에 대한 문제가 오랜 기간 지속되어 왔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여러 제도(규제)가 중첩적으로 운영 중임.
  - 특히 건설공사 계약 관계의 경우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체결되어야 하고, 계약당사자는 계약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해야 하는 사적자치의 원칙과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하기에 계약조건에서 어느 일방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중층적 보호가 이루어지고 있음.
- ◎ 이와 관련하여 현재 「국가계약법」과 「지방계약법」, 「건설산업기본법」에서는 부당특약 무효 규정을 운영 중임. 「하도급법」의 경우 ‘부당한 특약의 금지’ 조항이 있고 이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부당특약 유형을 규율하여 이를 제재함과 더불어 이를 구제하는 절차를 운영하고 있음.
- ◎ 허나 일각에서는 「하도급법」 또한 타 법령과 같이 부당특약 효력 자체를 무효화는 내용이 법제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함. 이는 현행 「하도급법」은 부당특약의 사법상 효력에 대한 규정이 없기에 부당특약임에도 사인 간 채무이행 의무가 존재하기 때문임.
  - 이 외에도 하도급자는 원도급자와 부당특약을 체결하더라도 「하도급법」상 무효 규정이 없기에 부당이득 반환청구가 불가능하고 대신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만이 가능한데 이 경우 「민법」상 과실상계 법리가 적용되어 하도급자가 부당특약에 동의한 점이 불리하게 작용되기 때문인 점 또한 주장의 주요 논거임.
- ◎ 이에 국회에서는 「하도급법」 개정(의안번호 제24639호)을 통해 하도급 거래 관계에서의 부당특약 효력 무효화를 법안 발의함.
  - 해당 법안은 지난 20대 국회에서 이미 고용진, 서형수, 조정식 의원(대표 발의)이 발의하였으나,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되었고, 현재 21대 국회에서도 남인순, 민형배, 송재호 등 다수 의원이 비슷한 법안을 제출하여 이미 계류 중인 상황임.
- ◎ 장기간 「하도급법」에서의 부당특약 효력 무효화가 상임위 통과가 되지 않는 이유는 해당 법이 시행될 경우 하도급 계약상 특약의 부당성을 판단하는 권한이 공정거래위원회에게 있기에 행정 제재로 해당 특약의 부당성이 인정되어 효력이 무효화 된다면 행정기관이 사법상 효력을 무효화시킨다는 점에서 삼권분립의 원칙을 어긴다는 점과 동일한 법 목적을 가진 여러 행정 제재가 존치한다는 점 때문임.

- 이뿐만이 아니라 유사 입법례 또한 부당특약 무효화 규정을 운영하고 있으나, 이의 판단 근거(일례로 「건설산업기본법」에서 명시 중인 ‘현저하게’의 판단 근거)가 법에 명확히 규명되어 있지 않아 부당특약 인정 판례가 없는 선언적 조문인 점에서 그러함.

- ◎ 하지만 이번 개정 법률안 발의에 따라 다시금 「하도급법」에서의 부당특약 효력 무효화의 적법성과 필요성에 대한 논쟁이 다시금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

## 이슈 2 : 계속되는 검단 사태 후속 입법… 논란 확대 예상

- ◎ 인천 검단 사태 이후 정부가 종합대책(건설산업 정상화 방안)을 발표하겠다고 예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입법부는 선제적으로 사업참여자의 책임 및 처벌 강화 중심 법안을 잇달아 발의 중임.
- ◎ 이번 달(9.22.~10.21.) 법안 발의된 4건의 발의 내용을 살펴보면, 모두 해당 법률의 실효성 및 타당성에 대해 여러 논란이 예상됨.
  - (의안번호 제24699호) 작년 국토교통부의 ‘부실시공 근절 방안’을 통해 공사중지권 행사로 인한 발주자시공사 손해에 대해서도 감리자의 고의과실의 없는 경우 면책을 허용하고, 구조부 결함 등 중대 위험에는 공사중지 명령을 의무화하겠다는 정책 방안을 발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공사중지 명령권’ 조치를 취하지 않는 감리자에게 벌칙 규정을 신설하는 법안을 별도 발의함.
  - 부실 감리자에 대한 처벌 강화(‘14년 「주택법」) 등에도 불구하고 감리자의 온전한 역할 수행 환경 조성이 이루어지지 못한 산업의 복잡한 이유(부족한 공사기간 등)와 계약 관계 종속의 주된 원인 등은 외면한 채 감리자의 책임과 처벌만을 강화한 법률안으로 인해 논란이 예상됨.
  - (의안번호 제24658호) 건축사와 건축구조기술사의 분리발주 의무화 법안은 건축구조기술사의 충분한 확보 여부, 건축사의 해당 분야 전문성과 관련한 여러 의견 외에도 산업 내 만연한 설계용역의 저가수주 경쟁, 감리독립성 결여 등 종합적인 문제를 외면한 채 발의되었기에 해당 단체(대한건축사협회, 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를 중심으로 다툼 심화가 예상됨.
  - 법적 분리발주는 건설산업 내에서 최초 고려가 된 것이 아닌 이미 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공사 등의 법적 분리발주에 따른 시공 과정에서 분리발주의 전문성과 비효율성에 대한 오랜 다툼이 발생하고 있는 영역임에도 이를 반면교사 삼지 못하고 법안 발의되었다는 점에서 아쉬움.
  - (의안번호 제24696호) 부실공사가 발생할 경우 국토부 또는 지자체가 직접 건축주에게 설계·시공 감리를 재시행(재시공 및 재용역)할 수 있는 근거법이 「건축법」 개정안으로 발의됨.
  - 허나 부실공사 발생 시 사업참여자에 대한 중층적 시설물 점검 절차와 행정 제재가 이미 마련되어 있다는 점과 임의규정이지만 부실공사의 경중에 따라 재시공 외 부분 보수보강 등으로 해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법안에서 미고려하였기에 그 필요성에 대한 다툼이 예상됨.
  - (의안번호 제24695호) 현행 공공공사인 경우 발주기관·지방자치단체, 민간공사인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개별 법령에 따른 준공검사·준공인가·사용검사·사용승인이 이루어지고 건설사업관리(감리)가 존재하는 공사의 경우 예비 준공검사 등이 함께 이루어짐에도 불구하고 최근 3년간 한국토지주택공

사의 준공검사에서 미승인 사례가 없었다는 이유로 특정 공사의 경우 별도 제3자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준공검사를 시행하도록 의무화하는 「국가계약법」 개정안이 발의됨.

- 제3자 전문기관 준공검사 시행을 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사업비와 공사기간 마련이 필요하나, 이에 대한 고려 없이 규제 강화 법안이 마련되었기에 이익형량의 적절성과 연관 법률의 개정 필요성에 대해 여러 논란이 예상됨.

- ◎ 건설산업은 이미 중층적 규제와 절차가 촘촘히 마련되어 있는 산업이고 여러 업역이 구분된 산업 내 구성원이 협력하여 사업을 수행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입법을 통한 규제와 책임 강화는 산업 내 여러 논란과 파열음을 일으킬 수밖에 없음.
- ◎ 건설산업 진흥을 위해 정부의 종합적이고 거시적인 대책 마련 이후, 이와 연관된 보완적 입법 활동의 연계 추진이 필요한 시점임.

### ■ 건설산업 주요 관련 법률안 발의 및 입법예고 현황 (9.22.~10.21)

법률명	주요 내용
「건설기술 진흥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의안번호 : 제24699호 (장철민 의원 등 12인)] (23.09.25 발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안이유) 현행법에 명시된 감리를 통한 '공사중지 명령권'은 설계도서 등의 관계 서류와 다르게 시공한 경우, 안전관리 의무를 위반한 경우, 환경관리 의무를 위반하여 인적·물적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에 재시공 또는 공사중지를 명령할 수 있는 조치임. 그러나, 공사현장에서 해당 권한이 실제로 행사되는 사례가 드물어, 건설현장의 책임감리가 사실상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있음.</li> <li>- (제안방향) 안전에 중대한 위험이 우려되는 경우에 대한 '공사중지 명령권'을 의무화하고, 해당 조치를 취하지 않은 공사감독자 등을 대상으로 한 벌칙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공사중지 명령권'의 실효성을 강화하고자 함.</li> </ul> </li> </ul>
「건축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의안번호 : 제24658호 (강대식 의원 등 11인)] (23.09.25 발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안이유) 건축물의 설계와 감리 등의 업무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현행법에 따라 건축사가 수행하되, 건축물 구조 관련 업무에 대해서는 전문기술자(예 : 건축구조기술사 등)의 협력을 받을 수 있음. 이처럼, 건축구조기술사의 역할은 건축사를 통해 간접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건축 전 과정에서 면밀하게 고려되어야 할 구조상 안전에 관한 전문성이 온전하게 반영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음.</li> <li>- (제안방향) 건축구조에 대해서는 건축구조기술사가 설계와 감리 등의 업무를 직접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건축물의 안전을 강화하고 부실공사를 예방하고자 함.</li> </ul> </li> <li>• [의안번호 : 제24696호 (장철민 의원 등 12인)] (23.09.25 발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안이유) 발주·설계·시공·감리 각 단계에 다수의 참여자가 관여되어 있고 다양한 공사목적물이 존재하는 건설공사 현장의 특성상, 특정 요건을 갖춘 시설물에서 부실공사 등으로 인해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책임 소재에 대한 원인 규명이 어려워지고 시정을 요구할 주체가 모호해지는 문제가 있음.</li> <li>- (제안방향) 건축주가 설계·시공·감리 등의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아 해당 시설물에서 부실공사가 발생하는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건축주에게 설계·시공·감리 절차를 다시 진행하도록 요청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li> </ul> </li> </ul>

법률명	주요 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의안번호 : 제24695호 (장철민 의원 등 11인)] (23.09.25 발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나) 및 지자체는 시설물이 모두 완성되어 기능과 작동에 이상이 없고, 상품으로의 가치를 온전히 발휘할 수 있는 상태인지 확인하기 위해 시설물의 사용 승인 전 준공 검사를 실시할 수 있음. 하지만, 최근 3년간 약 300건의 준공 검사에서 단 한 건의 미승인 사례가 없었던 경우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준공 검사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임.</li> <li>- (제안방향) 특정 요건에 해당하는 계약의 경우, 별도로 지정된 전문기관의 감독·검사를 의무화하여 현행 제도의 실효성을 보완하고자 함.</li> </ul> </li> </ul>
「국가재정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의안번호 : 제24660호 (윤두현 의원 등 21인)] (23.09.25 발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안이유) 기획재정부 장관은 현행법에 따라 특정 요건(총사업비 500억원 이상, 국가의 재정 지원 규모 300억원 이상)을 갖춘 신규사업을 대상으로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해야 함. 이와 함께, 현행법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비수도권 도시철도사업은 해당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쳐야 하는 사업임.</li> <li>- (제안방향) 비수도권 도시철도사업은 지역 균형발전에 막대한 영향을 미침에도 불구하고, 지방 인구 감소 등으로 경제적 타당성 확보가 어려워 사실상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기 어려운 상황임. 이에,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 범위에 비수도권 도시철도사업을 포함하고자 함.</li> </ul> </li> <li>• [의안번호: 제24900호 (이원택 의원 등 10인)] (23.09.27 발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안이유) 1999년 예비타당성조사 도입 이후, 조사 대상 사업의 요건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어, 우리나라 경제 규모 및 상황에 맞도록 기준액을 조정해야 할 필요성이 큼.</li> <li>- (제안방향)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의 요건을 상향하고(총사업비 500억원 이상, 국가의 재정 지원 규모 300억원 이상 → 총사업비 1,000억원 이상,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 600억원 이상), 지역균형 발전에 기여가 가능한 사업에 가중치를 부여하여 지역균형 발전을 촉진하고자 함.</li> </ul> </li> </ul>
「대·중소기업 상생 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의안번호 : 제24934호 (김한정 의원 등 10인)] (23.09.27 발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안이유-①) 현행법은 수탁·위탁거래에서 위탁기업의 위법 행위로 손해를 입은 자가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법원은 중소기업부 장관에게 해당 사건에 대한 조사 및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그러나, 법원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자료 제출 등의 협조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하는 상황임.</li> <li>- (제안이유-②) 위탁기업이 보복을 목적으로 수탁기업에게 부당한 거래행위를 하거나 수탁기업의 기술자료를 유용하는 경우, 현행법은 손해액의 3배 이내에서 배상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위탁기업의 위법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음.</li> <li>- (제안이유-③)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제조 및 용역 위탁거래에서 원(原)사업자의 임의 계약 취소, 제조품 수령 거부, 저가 하도급 행위 등의 부당 행위에 관해 그 목적을 불문하고,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음. 수탁·위탁거래에서도 이와 유사한 행위를 한 위탁기업에게 무거운 손해배상책임을 부과할 필요성이 있음.</li> <li>- (제안방향-①) 손해배상청구의 소에서 법원이 위법행위 증명이나 손해액 산정을 위해 중소기업부 장관에게 관련 자료 제출을 명하는 경우, 이를 제출토록 함으로써 자료 확보에 대한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li> <li>- (제안방향-②)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의 기술자료를 유용하는 경우, 손해배상금액의 상한을 손해액의 10배까지 상향함으로써, 위법 행위의 발생을 최대한 방지하고자 함.</li> <li>- (제안방향-③) 기술자료 유용 이외의 부당한 거래행위에서도,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 책임을 지도록 함으로써 피해기업을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li> </ul> </li> </ul>

법률명	주요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의안번호 : 제24988호 (김경만 의원 등 16인)] (23.09.27 발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안이유) 현재 수탁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납품대금연동제가 시행 중이지만, 납품대금 연동 대상에 전기·가스 등의 에너지 요금은 포함되지 않아, 해당 요금 급등 시 에너지 사용량이 많은 업종(예: 금형, 주조, 용접, 열처리 등)의 수탁기업은 그 상승분을 온전히 부담해야 하는 애로사항이 큼. 또한, 위탁기업이 납품대금 연동을 피하려는 목적으로 하나의 수탁·위탁거래를 단기간 또는 소규모로 나누어 위탁하는 '쪼개기 계약'을 비롯해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는 부정한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관련 행위를 제재하는 데 한계가 있음.</li> <li>- (제안방향) 납품대금 연동 대상에 에너지 요금을 포함하고, 납품대금 연동을 피하기 위한 '쪼개기 계약' 및 납품대금 연동을 하지 않기로 하는 부당한 합의를 위탁기업이 요구하지 못하도록 하며, 관련 분쟁 발생 시 위탁기업이 입증 책임을 지도록 하는 등의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공정한 수탁·위탁거래 질서를 도모하고자 함.</li> </ul> </li> </ul>
「지방재정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의안번호 : 제24663호 (강대식 의원 등 10인)] (23.09.25 발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안이유) 지방자치단체가 재정투자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지방재정법」에 따라 예산편성 전에 해당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심사하는 지방재정투자심사 제도를 거쳐야 함. 또한, 공공 주택지구에서 조성된 학교용지에 시·도교육청이 총사업비 일정규모 이상의 학교를 설립하려면, 동법 시행령 및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거하여 교육부 장관의 투자심사를 거쳐야 함. 그러나, 교육부 장관의 투자심사를 통과하지 못해 학교설립계획이 무산되고 학교용지가 장기간 미사용 상태로 남는 경우가 있음.</li> <li>- (제안방향) 공공주택지구에서 조성된 학교용지에 학교를 설립하려는 경우, 교육감의 자체 투자심사를 거쳐 예산편성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학교 설립의 수월성을 도모하고자 함.</li> </ul> </li> </ul>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의안번호 : 제24639호 (전해철 의원 등 10인)] (23.09.22 발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안이유) 현행법은 원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등의 부당한 특약이 설정되지 못하도록 강제하고 있음. 그러나, 부당한 특약이 설정되더라도, 하도급 계약의 민사상 효력은 그대로 유지되어 수급사업자의 권리가 취약해지는 측면이 있음.</li> <li>- (제안방향) 하도급 거래 계약에서 부당한 특약이 존재하는 경우, 그 특약을 무효로 하여 수급사업자를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li> </ul> </li> </ul>